

서울특별시 국제문화행사 지원 조례안

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김형재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 아이수루 의원입니다.

-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국제문화행사 지원 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-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살펴보면, 최근 국제문화행사는 단순히 문화행사를 넘어 도시 브랜드와 국제교류, 관광산업, 다문화 정책을 연계러하는 핵심 정책 수단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.
- 특히, 서울특별시는 글로벌 도시로서 국제문화행사 개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, 다문화·청년·관광·국제교류 정책과 연계한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
- 이에 올해 4월 제정한 「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」을 근거로 서울특별시 차원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고, 국제문화교류 활성화 및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

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.

- 이에 안 제1조 및 제2조의 경우, 「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개최되는 국제문화행사의 체계적 지원 및 육성을 통한 국제문화 교류 활성화, 문화도시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, 국제문화행사, 주관기관, 다문화 국제행사 조항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.
- 또한, 안 제3조의 경우, 시장의 책무로서 국제문화행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제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시장이 수립·시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.
- 안 제4조는 기본계획 수립 조항을 규정하여, 시장이 국제문화행사 지원 및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해, 국제문화행사, 국제교류, 민간협력뿐만 아니라, 다문화, 청년, 지역문화 연계 사업 지원 방안 등에 대한 근거 조항을 마련 하였습니다.
- 안 제5조의 경우, 국제문화행사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조항으로 국제문화행사 개최 및 운영 지원, 국제 전통문화, 국제 청년·예술인 등을 비롯해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참여 프로그램에

이르기까지 국제문화행사 활성화의 사업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.

- 안 제6조의 경우, 국제문화행사 지원을 위한 재정 지원 조항을 마련하였으며, 안 제7조의 경우 국제문화행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국내외 기관·단체·대학·기업 등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한 민관협력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.
- 안 제8조 및 제9조의 경우,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한 조항으로 국제문화행사 지원 정책에 대한 서울특별시 국제문화행사 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한 실질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.
- 안 제10조의 경우, 실태조사 및 연구 조항을 마련하여 국제문화행사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, 안 제11조의 경우 국제협력 및 도시외교에 대한 조항으로, 국제문화행사를 통하여 해외 도시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.
-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의 경우, 국제문화행사의 발전과 국제문화교류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에게 표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.

☐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☐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